

瑞山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1. 提出者：瑞山市長

2. 提出日字：1999. 4. 9

3. 提案理由

상수도요금 및 제수수료등을 인상하고, 읍·면·동이 다르게 구분규정되어 있는 상수도요금 및 시설부담금을 단일화하였으며, 그동안 상수도급수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보완 하려는 것임.

4. 主要内容

가.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검정시험 폐지 및 자격요건 완화(안 제10조).

-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검정시험 폐지
- 건축배관 및 배관 기능사(위생분야) 자격취득자를 배관관련 기능사로 하고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자격자 추가적용
- 서산시에 사무소를 둔 상수도로 설비면허소지자를 서산시 지역 제한 폐지

나. 시설분담금 조정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된 것을 단일화 함(별표 1).

다. 32mm 상수도 계량기 설치(별표 1).

라. 신고사항중 기구분할 신고시 시에서 확인 가능한 기구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마. 상수도요금의 조정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구분된 것을 단일화하고 생산원가 58% 수준인 현재 요금을 생산원가 74%수준인 평균 26%를 인상토록 함(별표 2).

바. 1개의 수도전으로 영업용과 가정용수도 병행사용시 세대당 월 15톤씩 가정용 요금을 부과하던 것을 영업용의 업종도 적용토록 함(안 제29조).

사. 사용수량의 인정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한 옥내누수는 전 3월 평균사용량으로 조정(안 제30조).

아. 제수수료 조정

- 급수공사 대행업허가 관련 수수료 인상(안 제10조).
- 제수수료 인상(안 제38조).

자. 안마시술소에 대한 업종적용 조정

욕탕 2종 적용에서 영업용과 욕탕 2종으로 적용토록 함(별표 3).

5. 檢討意見

-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과 수도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정한 조례임.

-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58% 수준인 수돗물 값을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년차적으로 생산원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요금을 현실화하여 물의 과소비를 억제하고, 재원을 확충하여 상수도시설을 개선하는등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에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료됨.
- 또한, 동지역과 읍·면의 상수도요금 및 시설분담금이 이원화 된 것을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수용하므로써 부득이 단일화하였음.
- 다만,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관련제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인상한바 대폭인상하게된 원가분석 산출근거 등의 설명이 요구됨.
-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도지사로 등으로부터 불합리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개정권고된 사항으로써 서산시공고 제99-30('99.2.20)호로 입법예고를 거친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參考資料

- 가.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사항(충청남도 수자원 58442-1851호, '98.10.20)
- 나. 감사원감사결과 조치계획(" 58442- 478호, '97.4.3)
- 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회의 결정사항(충청남도 예산 13380-329호, '98.5.14)
- 라. 서산시물가대책위원회 공공요금 조정결과('99.1.4)